

청주교육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1. 4. 21. 규칙 제1268호

1차 개정 2020. 5. 11. 규칙 제1523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센터의 업무추진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조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제3조 (기능 및 활동)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총괄·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
3.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

제4조 (운영위원회) 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전담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담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전담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간사는 센터의 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, 행정사항 집행, 회의 내용 보고 등을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각종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(2011. 4. 21. 규칙 제1268호)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5. 11. 규칙 제1523호)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